



구 리 소 방 서



수신 임O원 귀하

(경유)

제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공시송달

1. 전화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**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** 제10조 1항 2호 위반으로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합니다.
2. 다만,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귀하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수취거절 및 직접 방문전달하려 하였으나, 수령거부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**『행정절차법』**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3. 아울러 위의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서를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로 2018. 10. 23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치명령서 1부.
2. 의견진술서 1부. 끝.

구 리 소 방 서



지방소방위	김현채	소방특별조사 팀장	고경수	재난예방과장	전결 2018. 10. 17. 고광현
협조자					
시행	재난예방과-12148	(2018. 10. 17.)	접수		
우 11952	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6, (교문119안전센터) (교문동) / http://119.gg.go.kr/guri				
전화번호	031-570-6507	팩스번호	031-590-0579	/ naru119@gg.go.kr	/ 비공개(6)